#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13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 송옥주 · 권칠승 · 한정애

이수진 • 추미애 • 한민수

김남희 • 박 정 • 전종덕

박해철 · 황명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평형수의 처리량·교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 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24년 3월 22일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이 2025년 10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이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및 관리를 효율화·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

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소유자는 제10조에 따른 선 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 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기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제38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제4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 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소유자는 제10조에 따
	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
	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
	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
	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u>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u>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
	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
	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
	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
	<u>야 한다.</u>
	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자기록부 검사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 저 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협정을 체결하여야한다.
1.·1의2.(생략)

 1의3. (생 략)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8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	
인서의 발급 절차·기준, 전자	
기록부 적합확인서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한다.	
네30조(검사 등의 대행) ①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u>발급</u>	
<u>1의4.</u>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38조(수수료) ①	

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 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1.·1의2. (생략) <신설>

- 2. ~ 7. (생 략) ② ~ ④ (생 략)
-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신 설>

5. ~ 11. (생 략)② (생 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를 신청하 는 자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 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